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세무1과장

- (2) 규제심사: 규제개혁추진단
-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 1.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 재정 및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15. 1. 1. 일부 개정내용 반영(안 제2조, 제6조관련)
 -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범위 축소(§38 ④)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종료(§54 ②)
- 나. 상위법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4조, 제16조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84조/제96조→제180조
-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14.12.31→’17.12.3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 제54조, 제180조, 제18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15. 3. 5.~2015. 3.25.(20일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 후단 중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로 한다.

제16조 중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한다.

조례 제91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면 전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14.12.31로 종료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성동구 세무1과 엄은주 (연락처02-2286-5294)

< 관 계 법 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안 제2조 관련]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31.>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삭제 <2014.12.31.>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제14조 관련]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

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안 제16조 관련]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